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314호로 2024년 4월 9일 전승관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다. 인사청문 및 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첨부서류 등(안 제5조~제6조)

라. 위원회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회 기간 규정(안 제10조)

마. 인사청문회 공개 원칙과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규정(안 제15조~제1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3항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7조의2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된 범위 안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직위만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개정 1)조문 해설(이하 “조문해설”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별로 살펴보면 **안 제1호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sup>2)</sup>, 안 제2호는 우리 구 출연기관인 영등포문화재단의 <sup>3)</sup>대표이사 및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sup>4)</sup>이사장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미래교육재단의 경우 인사청문대상으로, 정관상 “법인을 대표하고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판단의 기준을 대외 직함이 아니라, ‘정관’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기관장에 해당하는 직무를 ‘기관 대표, 업무 총괄, 경영성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 해석함.

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영등포문화재단 정관」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4)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정관」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 돼야 하는지, 또는 실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전반에 책임을 지는 “대표”가 돼야 하는지 갑론을박이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질의회신을 요청('24.4.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회신('24.4.24.)을 받음. 행정안전부 의견을 참고하여 現정관 및 기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이 인사청문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요지**

- 영등포구 출연기관인 (재)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의 임원 중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제4호)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
  - (갑설) 정관에서 ‘법인 대표·업무 총괄’이라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는 이사장이 기관장에 해당
  - (을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재단 업무 전반에 책임을 지는 대표가 기관장에 해당

□ **검토의견 : 갑설 타당**

- 관련 법령(「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 등)을 참조할 때, 출자·출연 기관장은 해당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임원임
  - 정관에 따를 때, 재단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기관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재단법인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정관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기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장이 재단의 인사(임용·복무 등) 및 정원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는 점에서도 기관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됨

재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 이사장을 말한다.  
재단 사무분장 규정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재단의 팀별 정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대표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재단 업무 처리를 보좌한다는 점에서 재단의 기관장으로 보기 어려움

정관 시행규정 제9조(운영기관) 제9조(운영기관) ② 대표와 직원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재단업무를 처리한다. (이하 생략)

- 다만, 업무 중복 소지를 없애고, 이사장의 기관장 직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관 등 재단 규정 개정 권장

※ (예시) 직제 및 정원규정 제8조,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업무를 처리한다' 등으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간생략)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목적을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시기를 구의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4조제3항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위원회의 목적인 인사청문이 완료된 “본회의에 인사청문경과 보고 시”까지 존속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5조에서는 청(들을 聽)문(들을 聞)의 한자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듣는 것을 기본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증언·진술의 청취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면밀한 인사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에서는 인사청문요청 시에 각 호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인사청문대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류들은 「인사청문회법」 제5조 및 서울 타자치구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자료임.
- 안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의 기한(20일)을 규정하면서도 그 기한

내에 끝나지 못했을 경우 구청장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청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연장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한 경우 구청장이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게 규정하여 인사청문의 기약없는 지연으로 인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8조에서는 안 제5조의 인사청문의 기본 방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증인 등의 증언·진술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때에 의장이 인사 청문요청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안 제7조제4항과 비슷한 맥락으로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1조에서는 경과보고서에 경과 및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제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본회의 전에 경과보고서를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하여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신중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의 송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의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및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각각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로 자료제출요청 요건을, “위원회의 의결” 및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검증 요건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사유 외에도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구 시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인사청문(聽聞)의 기본 진행방식을 질의답변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대상자는 질의 등에 대하여 답변 등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8조에서는 공정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하도록 명시하였음.

## ○ 검토 결과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23.9.22.시행)되어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
-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적으로는 106개의 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서울 8개의 자치구<sup>5)</sup>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음. 또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

5) 강동,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서대문, 양천

법규과-106(2024. 1. 5.)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관련 조례 제·개정 안내」 공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 직위 후보와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의 기관장 직위 후보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걸맞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인지를 인사청문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요청안의 필수 첨부 서류, 자료제출요청, 답변 의무, 검증 등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인사청문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써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요청으로 연장된 기한 내에도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할 시에 구청장이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위해 마련한 자료제출요청·검증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의결 등의 요건을 붙이는 등 집행기관과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선 주요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관련하여, 현재 미래교육재단의 이사장의 경우 비상근 및 무보수 명예직임에 따라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 신설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의견을 검토한 결과,

□ **총괄 의견**

- 의견 요지: 단서 조항 신설 요청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다만, 비상근 및 무보수 명예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래교육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공익법인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3.11.9.)을 통해 명칭을 개정하고, 목적사업 및 이사 인원을 확대하여 올해 1월부터 출범하였으며,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또한 ’23년도 4억 6,220만원에서 ’24년 11억 2,402만원(6억 6,182만원 증액)으로 확대됨. 구의 출연금, 법인 등의 기부금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미래교육재단의 기관장을 인사청문하여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기관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바, 이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보면,
- 행정안전부 조문해설 중 개정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정관 정비 필요” 항목으로 강동구 조례를 예시하여 조례·정관에서 규정한 인사청문대상이 모호한 경우 해당 인사청문대상이 규정된 조례·정관을 정비하도록 당부하였고,

### 개정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 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정관 정비 필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도 “업무 중복 소지를 없애고, 이사장의 기관장 직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관 등 재단 규정 개정 권장” 하였으며,
- 영등포문화재단의 경우도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이 있는 대상을 인사청문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 참고 자료

## 1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2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2023. 6. 13.> [전문개정 2011. 8. 4.]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 ⑤ (생략)

### 4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전문개정 2020. 12. 8.]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

## 5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

1 ~ 11 (생략)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 13 (생략)

② 삭제 <1993. 6. 11.> [제목개정 2009. 2. 3.]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정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 2023. 6. 13.>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6. 1. 19., 2019. 12. 3., 2023. 6. 13.>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4. 1.>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  
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2. 12. 11., 2013. 3. 23., 2014. 5. 9., 2016. 12. 20.,  
2017. 7. 26., 2019. 12. 10.>

1~ 11 (생략)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  
의무자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  
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2019. 12. 31., 2021. 4. 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무 분야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마. 삭제 <2017. 11. 28.>
  - 바. 입영 연월일
  - 사.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 아. 전역·소집해제 사유
4. 현역·보충역·대체역·전환복무 등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복무 분야
  - 나.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 다. 계급
  - 라.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 마.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법」 제 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부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칠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 가.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 나.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자
  - 다.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의 복무나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전문개정 2007. 12. 14.]

##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정관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제7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3.08.04.>  
③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 ⑥(생략)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정관

-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제8조(대표)** ①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재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표는 소관부서의 업무를 통합 또는 조정·운영할 수 있다.